

[별표 19]

**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**

(제15조제9항 관련)

<p>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</p>	<p>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,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, these products are of ... preferential origin.</p> <p>..... (Place and date)</p> <p>..... (Signature of the exporter,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)</p>
<p>작성방법</p>	<p>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원산지신고문안은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타이핑 · 스탬핑 · 프린팅 등의 방법으로 작성합니다. 수기로 작성할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되, 대문자로 기재합니다.</li> <li>2. 문안의 ...에는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.</li> <li>3. 장소 및 일자란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. 다만,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4.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, 수기로 서명을 합니다.</li> <li>5.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-가에 따라 별표 9 제4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"Derogation - Annex II(a)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"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.</li> <li>6. 터키와의 협정 제14조에 따라 제3국 전시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시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.</li> </ol>